## 낚시어선안전운항등을위한의무사항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,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의무 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2. 18.

보령시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"법"이라한다.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 및 그 어선과 낚시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 이라한다)의 영업시간은 일출 전 30분 ~ 일몰 후 30분까지(기상관측소 기준) 단,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검사된 낚시어선은 출입항 기준으로 하절기(4월 1일~10월31일) 04:00~20:00까지 , 동절기(11월 1일~익년 3월31일) 05:00~19:00까지로 하며, 다른 법령에 항해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운항회수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하계(4월1일 ~10월 31일) 1일 2회까지, 동계(11월1일~익년3월31일) 1일 1회로 한다. 단, 1회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 차 승객 수는 1·2회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5조(영업구역등) ①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군사시설보호법, 해상교통안전법, 원자력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- 2.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항에서 서단으로 10마일을 벗어난 구역 ②낚시어선업자는 보령시 연안의 유인도서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보령시 연안의 모든 도서, 갯바위 및 간출암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용섬
  - 2.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불모도
  - 3.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대화사도
  - 4.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소화사도

③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승선시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때에는 낚시승객에 대하여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야 하며, 낚시어선의 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.

제6조(낚시어선의 승객 준수사항) ①낚시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 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여야 한다.

- ②낚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- 2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 의사항이나 지시에 반하는 행위
- 3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안전운항 등을 방해를 하는 행위
- 4. 절벽과 위험한 갯바위 장소 등에 하선 또는 낚시를 하는 행위
- 5. 안전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, 또한 영업제한구역에 하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6.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.
- 7.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 관계법령에 포획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물고기는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8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
- 제7조(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)①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(선주·선원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)하고,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시켜야 한다.
- ②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영업통제구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, 출·입항 신고의 이행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고, 안전점 검 및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④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,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낚시어선에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어선 업 신고확인증 및 안전운항 준수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⑥승객이 사망하거나, 실종, 충돌, 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, 즉시 사고발생 보고 후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⑦구명조끼는 선실 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며 구명조끼 착용 법을 출항 전 교육하여야 하고,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.
- ⑧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⑨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 준수사항 고시 (보령시 고시 제2006-064호, 고시 제2008-053호, 고시 제2013-052호, 고시 제2015-239호)는 폐지한다.